

## ■ 법률 칼럼

## 영주권 신청 중의 고용주 변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과 I-140이 승인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우선 일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140과 I-485가 동시에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이 가능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에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도 AC 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



면 I-140과 I-485가 동시에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된 이후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AC 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한 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설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폐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폐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폐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케어 가입 폐널티 요주의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폐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폐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폐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폐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폐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폐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설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폐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 입니다.

## ■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당뇨 자체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질환 특성상 장기간 치료와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식단 변화나 정기적인 운동 등의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관리가 잘 된다면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 ■ 인슐린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평생 써야 한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생성 자체가 결국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하지만, 제일 흔한 당뇨인 2형 당뇨병에서는 질병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생활습관 교정이 잘 되는 경우 인슐린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 인슐린 때문에 당뇨합병증이 심해졌다?

많이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쓰고 나서 당뇨가 심해지고, 당뇨합병증이 왔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인슐린 주사는 대부분 당수치가 아주 높거나 일반 경구약으로 잘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시작할 때는 이미 당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합병증이 흔하게 오는 것이지 인슐린을 사용한다고 당뇨가 더 나빠지거나 부작용으로 당뇨합병증이 오는 것은 아

## ■ 과일은 많이 먹어도 된다?

과일도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착즙하거나 주스로 먹을 경우 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껍질째 통째로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Glycemic Index(혈당지수)라고 하여 혈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당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지수가 높은 과일에는 파인애플, 수박 등이 있고, 혈당지수가 낮은 과일은 사과, 오렌지, 베리류, 바나나, 배,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 &lt;오바마케어 &amp; 메디케어&gt;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 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 714.872.9377